

「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의안번호 제973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동의안은

-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된 이후 “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
- 서울시 여성·보육·가족·아동정책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·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 지원을 위하여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